

「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 월 23 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지침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총사업비 관리지침(기획재정부 훈령)」 적용대상 외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에 대한 해당 실·국(정책관)의 책임성을 강화하고, 실·국(정책관)의 자체 검토만으로 자율조정 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여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 사항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총사업비 관리지침 적용 대상 외 사업의 총사업비 조정절차 완화(안 제4조 및 제9조)

- 「총사업비 관리지침(기재부 훈령)」 적용 대상 외의 사업은 해당 실·국(정책관) 주관으로 총사업비를 변경·조정토록 개정

나. 실·국의 자주적인 자율조정 항목 확대(안 제9조 및 별표)

- 현행 규정의 물가변동, 경유세율 변경 외에 관급자재비 변경 등 실·국(정책관)의 자체 승인 가능한 자율조정 항목을 확대하는 별표 신설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재정담당관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 → 정책자료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 :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
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

- 팩스 : 044-201-5518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『정책자료-법령정보/입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(전화 044-201-328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